

성경과 법학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Holy Bible and Jurisprudence)

- 특히 모세오경을 중심으로(especially focused in Pentateuch)

김형남(경성대학교 법학과)

I. 문제의 제기

현 시대는 드러커(Peter F. Drucker)가 오랜 전 예고한 바와 같이 다원주의 사회가 도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현대는 한 마디로 정보화 사회(Information Age)의 극치를 이루는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²⁾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다원주의 경향이 최고도에 달해 인간성의 상실시대라는 표현조차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주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거나 부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파악된다.

주지하다시피 법학은 종합적인 사회과학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사회발전에 필요한 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학문으로 인식되어 왔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 해방되면서 모든 영역에서 독립이 달성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굳이 역사가들의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독립은 한참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에나 가능했었다. 특히 법학은 식민법학의 구태를 1960년대까지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다고 회고할 수 있다.³⁾

이러했던 과거 법학방법론보다 현재의 법학방법론은 서구의 초현대적인 이론과 관례들을 수용하여

1) Peter F. Drucker, 김용국 역, 새로운 현실(The New Realities), 93-98면.

2) 전자정부의 영어식 표현인 Electronic Government는 원래 전자 은행서비스를 뜻하는 Electronic Banking을 모방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황성돈, 정충식 공저, 전자정부의 이해, (다산출판사, 2002), 3-6면 참조.

3) 우리 민법은 일제가 만들어준 조선민사령이라는 법령을 1959년까지 사용하다가 1960년 1월 1일에 현행 민법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2), 24면 참조.

눈부시게 발전하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막연한 법학방법론이란 용어보다 법해석학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일 것이다. 왜냐하면 법학의 여러 가지 영역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영역이 법해석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법해석학이 정치권력을 합법화해주거나 사회적인 부정 부패를 눈감아주는 역기능을 행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더욱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치 권력자들이 법해석학을 악용하였고 무기력한 법학자들은 이들에게 이론적인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나 법 개념을 어떻게 하면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 법의 순기능을 되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에 관해 기록한 책이며 법해석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성경(Holy Bible)⁵⁾에 충실한 해석을 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성경은 함축적인 표현으로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인 해석(objective interpretation)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해석은 법해석과 유사하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헌들 중 법문(法文)은 그 무엇보다도 함축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석이란 '무엇인가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행위(the act of providing the meaning of something or explaining something)⁶⁾라고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예일(Yale) 로스쿨의 휘스(Fiss) 교수는 "해석이란 어떤 대상의 의미를 기계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또는 그 상호작용의 산물"⁷⁾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특히 성경해석은 학문적인 성격 외에도 휘스(Fiss) 교수의 표현처럼 '행위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성격(gnostic feature)을 가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성경해석의 주관적이며 영적인 측면을 지양하고 최대한 성경해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인바, 이런 일에는 특히 구약 성경 중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는 법 개념과 법 원리를 찾아내어 이를 현대적인 법해석학에 응용하는 것이 크게 도움을 주리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모세오경의 몇몇 구절에 담긴 법학적인 의미, 특히 '법 중의 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 기초한 의미와 원리, 또는 철학적인 법 개념과 법 원리를 파악하여 분석함으로써, 성경에 충실한 해석만이 '법이론 다원주의'에 빠져 현재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법해석학 영역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모세오경에 나타난 법 개념과 법원칙

4) 법해석학, 법정책학, 입법학, 사법학 등이 그것이다.

5) 김명수, 역사적 예수의 생애, (한국 신학연구소, 2004), 20면.

6) Random House Webster's College Dictionary, (New York: Random House Inc., 1995), p.705.

7) Owen M. Fiss, "Objectivity and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Law and Literature』, Chicago: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8), p.229.

1. 창세기-혼인과 가족제도의 창설

단순한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아담만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현재 혼인제도와 가족 제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국내의 한 헌법학자는 그의 저서에서 “현대문명국가에서의 가족관계는 봉건적인 남존여비사상을 배격하고 가부장 제도를 부정하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인 평등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의 가족관계의 성립원인이 되는 혼인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만이 아니라 자유로운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혼과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⁸⁾고만 서술하고 있다. 즉 그는 이러한 혼인과 가족제도의 기원과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현대 사회 혼인과 가족제도의 단면⁹⁾만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헌법학자들은 이처럼 그 단면만을 발견할 수밖에 없지만 이와 관련된 성경을 신중하게 해석해보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실질적인 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

창세기 2장 18절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믿는 사람들의 개별 신앙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현재 한국사회의 이혼문제¹⁰⁾를 해결할 좋은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즉 위 성경말씀처럼 ‘여자가 남자를 먼저 돕는 배필이 되지만, 고린도전서 7장 3절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찌라.”는 말씀에서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먼저 다하라고 강조함으로써 부부회합의 전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2. 출애굽기-헌법의 초기 형태, 국가 법체계의 형성

(1) 출애굽기와 고대 법전들의 관계

출애굽기가 저술된 연대는 대략 B.C. 1440년경으로 추정되기 때문에¹¹⁾ 역사적으로는 B.C. 1750년경에 제작되어진 함무라비 법전¹²⁾보다 후대의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출애굽기가 함무라비 법전을 인용

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277면.

9) 우리 헌법재판소도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 위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피상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결 1997.7.16.95헌가6 등 병합 참조.

10)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률은 약 45% 정도로서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370쌍이 이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7.7.19. 네이버 지식검색 참조.

11) 아가페 큰글 성경, 82면.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기초 위에서 작성된 율법책이므로 출애굽기에 표현된 율법들의 기원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은 창세기도 모세가 작성하였다는 데에 합의하고는 있지만 창세기에 나타나는 법적인 표현들과 그 뒤 네 가지의 경전에 이어지는 법적인 표현들이 언제부터 출현했는지를 정확하게 이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라비 법전을 비롯한 성경 외적인 법전들의 기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시대적으로는 늦었지만 모세에 의해 서술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십계명-헌법 및 국가법체계의 형성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서술하고 있다. 얼핏 보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열 가지 명령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법의 생성과정을 밝히는 법제사적인 관점에서 고조선의 팔조금법¹²⁾과 비교해보면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여덟 가지 조문 중에서 세 가지 조문만이 현존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는 ‘相殺 以當時相殺(사람을 살해한 자는 즉시 죽인다)’이라고 하여 현대 형법의 응보형주의를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가 7개 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사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조는 ‘相傷 以穀償(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서 배상하게 한다)’라고 하여 일단 동해보복 사상(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는 진일보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분화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원시적인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제3조는 ‘相盜 男沒入爲家奴 女子爲婢 欲者贖者 人五十萬(남의 재물을 훔친 남자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남자 노비가 되고 그 남자의 아내 또한 여자 노비가 되지만, 혹시 배상하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에게 오십만전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여 현대 형벌 중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노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액으로서의 오십만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도 법적인 시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2) 함부라비는 바벨론의 제1왕조의 여섯 번째 왕이며, B.C. 1792년부터 1750년까지 통치하였다. 이 법전은 바빌로니아어로 작성되었으며, 성경 외적인 법률문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총 282개의 법조문으로 구성된 방대한 법전이다. 이에 대해서는 Victor P. Hamilton, Handbook on the Pentateuch, (MI; Baker Book House, 2005); 강성열 & 박철현 역, 오경개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266면 참조.

13) 최용기, “헌법의 근원”, (헌법학연구 제1집, 1995.11), 15-17면. 최용기 교수는 팔조금법을 고조선시대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서술(15면 맨 아랫줄)하고 있는데 이는 팔조금법의 헌법적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첫째, 십계명에는 국가의 성문헌법처럼 전문(preamble)이 있다. 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말한다.¹⁴⁾ 주로 이 전문에는 헌법의 지도이념과 가치 질서 등이 담겨져 있다.

그런즉 십계명의 전문(출애굽기 20장 1-2절)도“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명시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죄악의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즉 어떠한 논리를 가져 오더라도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상숭배의 엄격한 금지라고 해석된다. 만약 이를 현대법체계로 해석한다면 우리 헌법이 헌법 전문과 헌법 제1조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다른 체제를 선택하게 되면 위헌이며, 결국 형사 처벌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의 계명들은 뒤에 나오는 여섯 가지 계명들의 기초가 된다.¹⁵⁾

셋째,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전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들이다. 제5계명은 부모와의 관계를 위한 규범을 세워주는 것이므로 모든 사회관계의 첫 출발점이 된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가족법의 모태이며 모든 민법과 상법 등 사법(私法) 전체의 모태가 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제6계명(살인 금지), 제7계명(간음 금지), 제8계명(질도 금지), 제9계명(위증 금지), 제10계명(권력자나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 금지)¹⁶⁾ 등은 모두 형사법의 기원이 되는 계명들이다.¹⁷⁾

바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국가인 이스라엘의 기틀을 만들고, 국가법체계의 기본인 민사법과 형사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2) 엄격한 형벌제도

현대 형벌체계는 이미 오래 전 엄격한 ‘응보형주의’에서 ‘교화형주의’로 탈바꿈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을 형무소라고 하지 않고 교화한다는 의미의 교도소(矯導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4) 권영성, 앞의 책, 129면.

15) John J. Durham, Exodus of Word Biblical Commentary, (Texas: Word Books, 2000); 손석태 & 채천석 역, 출애굽기, (도서출판 솔로몬, 2000), 480-481면.

16) 원래 열 번째 계명의 원형은 과도한 욕심 때문에 뇌물을 받기를 갈망하는 권위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령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손석태 & 채천석 역, 위의 책, 490-491면 참조.

17) 필립스라는 학자도 “십계명은 시내 산에서 주어진 고대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전의 형법의 구성요소가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손석태 & 채천석 역, 위의 책, 491면 참조.

그러나 실제 행형을 실시한 정부의 통계 등에 의하더라도 교도소 내에서의 범죄의 확대재생산 또는 재범, 유사범죄의 발생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래 전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엄격한 형벌체계가 범죄를 예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살인죄(사람을 쳐 죽이는 자,12절), 존속상해죄(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15절), 약취유인죄(사람을 후린 자,16절), 존속 명예훼손죄(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17절)를 범한 자들은 고려의 여지없이 절 대적 형벌로서의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13절에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 사람이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라고 하여 ‘도피성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하나의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끝으로 엄격한 형벌제도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동해보복사상’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다. 즉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고 명시함으로써 엄격한 형벌제도를 나타내고 있다.

(3) 손해배상법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손해배상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일단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찌니라”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불법행위인 가축의 절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형사책임이 분화되기 이전의 형태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피해액의 다섯 배나 네 배의 금전손해배상을 명하고 있는 것은 형사벌로서의 벌금형을 추가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된다.

(4) 정당방위개념

출애굽기 22장 2절은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니”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상 정당방위개념의 모태가 된다.¹⁸⁾ 주지하다시피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즉 자기 또는 타인의 법적인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당할 위험에 처한 경우에 국가기관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긴급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다.¹⁹⁾

18) 손석태 역, 출애굽기 535면.

19) 정성근, 형법총론, (법지사, 1987), 254면.

이러한 정당방위를 출애굽기 22장 2절에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5) 재판의 공정성

현대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공정한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긴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정한 재판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²⁰⁾고 실시하고 있다. 즉 공정한 재판이란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말을 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자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주관하는 재판관(법관)과 재판을 돕는 증인의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출애굽기 23장 1절은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라고 하여 증인으로서 위증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다. 또한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어 두호하지 말찌니라”라고 하거나,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라고 해서 재판에서 재판관은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는 생각보다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또한 출애굽기는 최근까지 현실 사회에서 항상 말썬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뇌물수수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23장 8절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고 경고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공직자들이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살아 있는 말씀이 된다.

3. 레위기-성범죄에 대한 경고 메시지

(1) 근친상간 및 난잡한 성관계의 금지

레위기 18장 6절은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찌니라”고 하여 전반적인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소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이미 창세기(창 20:12)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복누이와 결혼하였기 때문에 이 율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를 징책하는 규정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19절(월경 중의 여인과 성관계 금지)부터 23절(수간의 금지)까지는 현 시대에 빈번히 일어나고

20) 현재 1996.12.26. 94헌바1.

있는 난잡한 성관계를 예언하면서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²¹⁾

(2)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실제 재판을 경험해보면 절실히 느끼게 된다. 전술한 출애굽기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였지만 또 레위기 19장 15절에서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찌며”라고 하여 공정한 재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해주고 있다. 즉 재판을 할 때에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권세 있는 자도 편들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다. 여기에서 현재의 많은 법관들에게 자신들에게 소중한 지침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4. 민수기- 치의법권 지역과 과실치사

민수기 35장은 현대 형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5장 11절은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city of refuge: 망명을 하는 도시, 난민 수용지)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고 규정함으로써 과실치사를 행한 범죄자를 엄격한 형벌에 처하지 말고 현재의 징역형과 같이 도피성에서만 칩거하게 하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살인행위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형벌인 절대형으로서의 사형제도만을 두고 있던 구약시대에서 이와 같은 현명한 예외를 두고 있었다는 것은 실로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착안하여 우리 형법 제14조에서도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실에 대한 처벌이 예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35장 16절²²⁾부터 31절까지 꾸준히 현대 형법각론 분야에서 거론되는 ‘고살(故殺:manslaughter)²³⁾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형법 용어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든 법의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5. 신명기-공정한 재판과 관할, 심급제도, 수사방법

21) 강성열 역, 오경개론, 381면.

22)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민 35:16)

23) 이재상, 형법신강(각론 I), 박영사, 1990, 26면 참조. 고살은 사전에 계획함이 없이 우연히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고살에 비해 사전에 계획된 살인을 ‘모살’이라고 하여 더욱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아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1) 공정한 재판과 법원의 관할권

신명기 16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각 지역마다 관할권을 두고 시민들을 재판하라”는 말씀이 될 것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관할권제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다.

(2) 심급제도의 기원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심급제도²⁴⁾를 두고 있다. 각급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신명기 17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급법원에서 소송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급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는 소송법상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²⁵⁾ 여기에서 신명기가 소송법의 기원도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특히 11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는 말씀은 상급법원은 법률심(재판에 법률이 정당하게 적용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만을 행하고 사실심을 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잘 표현하고 있다.

(3) 수사방법론

심지어 신명기 21장은 형사절차 상 수사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성경의 치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특히 신명기 21장 1절과 2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짚 것이요”라고 현대 형사절차상 수사원칙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그 지역을 폐쇄하고 그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인 도심지와의 거리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²⁶⁾

III. 결론

24) 심급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http://www.scourt.go.kr>를 참조.

25) 同旨, 강성열 역, 오경개론, 552면.

26)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개념을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수사란 “범인을 발견·보전하고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 것이 우리나라나 일본의 통설이다. 이에 대해서는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1985), 300면 참조.

해밀턴 교수의 표현처럼 구약성경에서 모세오경만큼 성경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많이 된 분야는 없을 것이다.²⁷⁾

하지만 오경의 법률적인 부분만큼은 누구보다도 법학자들의 핵심적인 연구 분야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기초적인 성경지식 없이 법학지식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회가 우리 한국사회임을 부인할 수는 없기에 이 논문의 주제가 주는 의미는 크다고 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의 말씀이신“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8)는 말씀처럼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체적인 법원칙과 법제도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기인 최소한 B.C 1440년 경에 집필되었다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정치지도자, 종교지도자, 법률전문가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시민들도 초대 교회의 성도들처럼 성경에 입각한 원칙론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 앞에 놓인 기본에 충실하게 된다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법원칙에서 많이 이탈되어 가중된 혼란을 만들어온 한국의 법질서가 정립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계기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7) 강성열 역, 오경개론, 13면.